

부설건설업체 퇴출 및 건설시장 위법행위 근절

부설건설업체 퇴출 및 건설시장 위법행위 근절

앞으로 전산망을 통해 건설시장에서의 부설업체 퇴출이 가속화되고 불법하도급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구성, 운영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년간 부설업체 2만개를 적발, 상당수를 퇴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업체 난립과 불법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더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본격 가동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 시스템(www.KISCON.net)과 대한설비건설협회등 건설관련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활용해 부설업체 퇴출 및 불법하도급 등 건설시장에서의 위법행위 근절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부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전산자료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및 시공실적 미달여부를 조사, 적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갱신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설업체 퇴출조치 강화

1999년에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공공공사의 발주방식도 변별력이 부족한 적격심사 제로 운용됨으로 인해 부설건설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자자체를 통해 지난 3년동안 등록 기준 강화, 등록갱신제도 도입 및 등록기준미달 업체를 조사하여 20,334개사를 등록말소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부설건설업체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 등록업체(03.2) : 49,791개사(일반 12,752, 전문 37,039)
- 행정처분현황 : 2000년 4,095개사, 2001년 4,462개사, 2002년 11,777개사

따라서 부설업체 퇴출을 보다 강력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부설업체 조사 및 관리 강화, 각 협회의 시공능력 평가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시공실적기준 및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

부실건설업체 퇴출 및 건설시장 위법행위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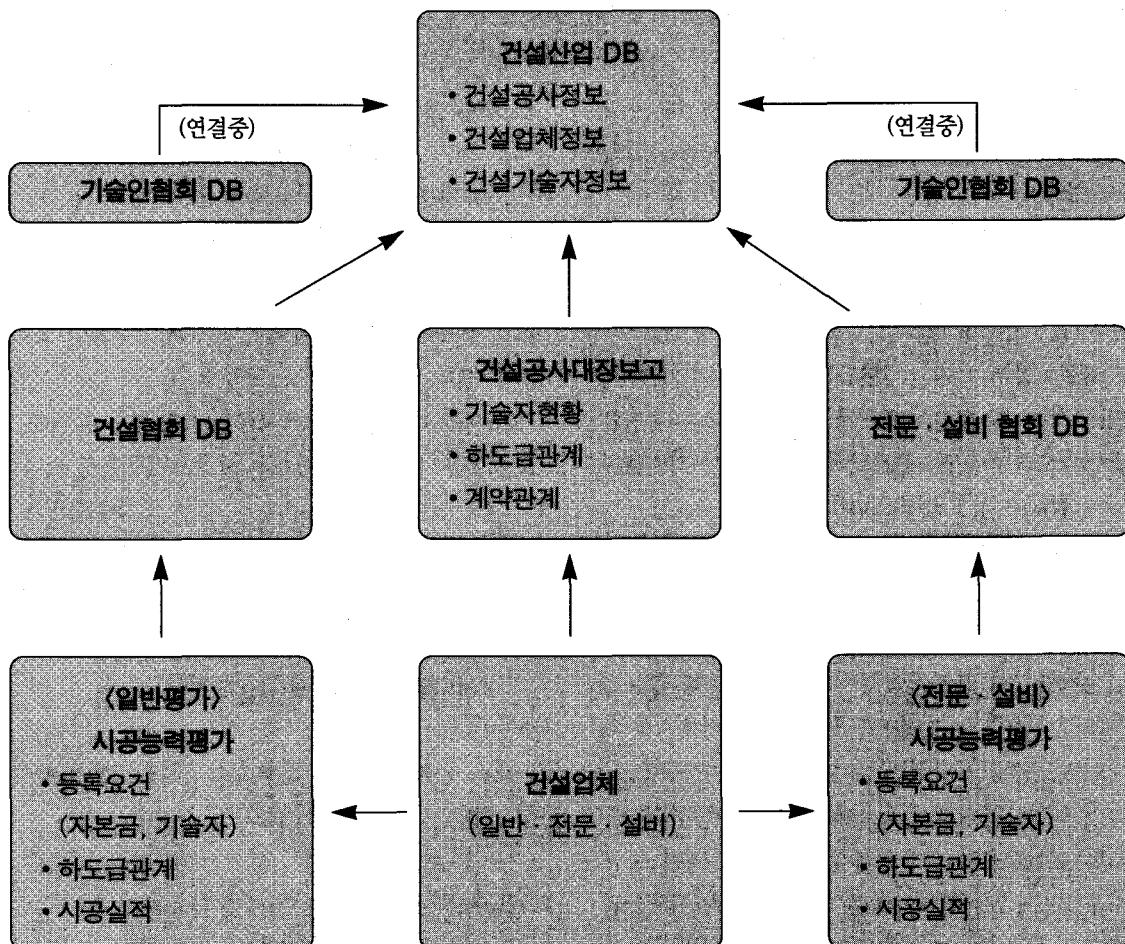
- 매년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각 업체는 시공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각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 이들 자료는 각 협회의 전산망에 축적되고 있으므로 이들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시공실적기

준 및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시공실적기준

- 토목 · 건축 · 조경공사업 : 2.5억원
- 토목건축 · 산업설비공사업 : 6억원

▶▶ 전산시스템을 통한 건설업체 관리체계



※ 건설공사대장보고(03시행) : 건교부(국토연구원)에서 관리

※ 시공능력평가자료(97시행) : 각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

부실건설업체 퇴출 및 건설시장 위법행위 근절

- 전문건설업 : 5천만원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기준미달업체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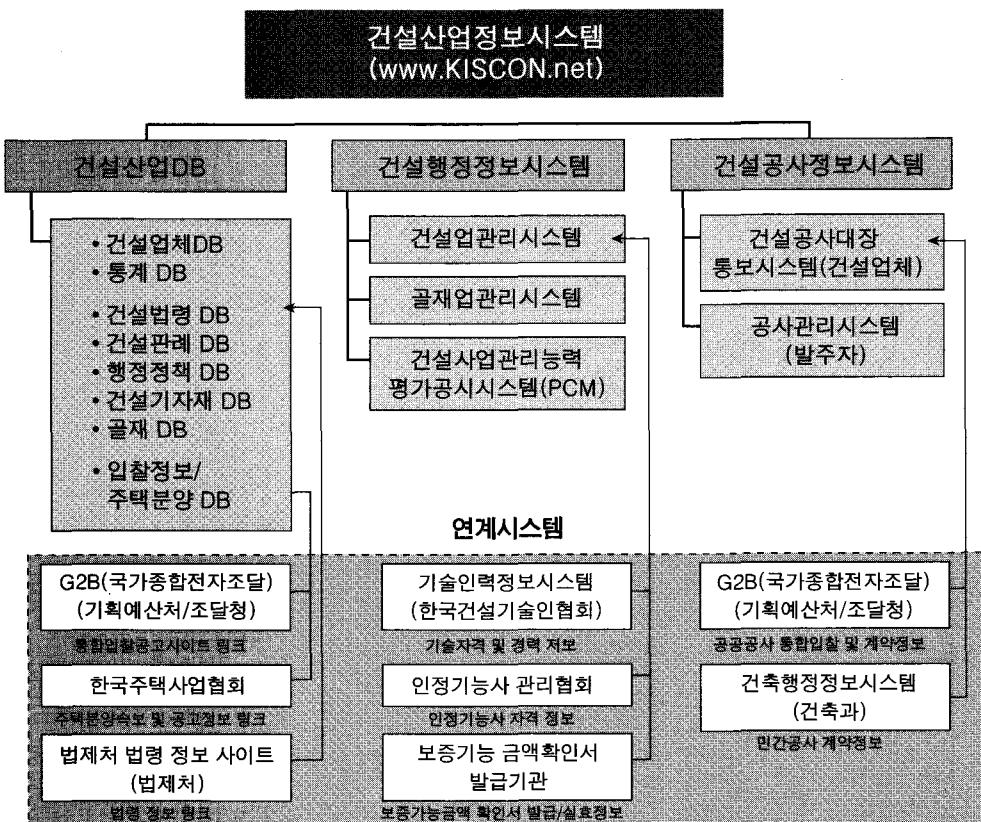
- ②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실업체 퇴출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등 위법행위로 행정처분등을 받은 업체현황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통합 공시하여 발주자등이 이를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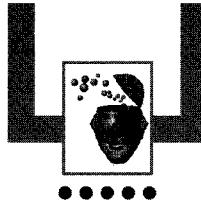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건설업체의 자연퇴출을 유도한다.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건설산업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기술자의 종복등록 및 기준 미달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건설산업정보시스템(www.KISCON.net)**
개요 참조

▶▶ 시스템 구성





부실건설업체 퇴출 및 건설시장 위법행위 근절

건설산업정보시스템

□ 시스템 개요

○ 건설산업 DB

- 건설산업DB, 건설통계DB, 건설법령DB 등 8개 DB로 구성
- 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산업 원천자료 총 187만건을 표준화된 전산데이터로 가공·입력
- 건설산업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등으로 이용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 건설업관리시스템, 골재업관리시스템 및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구성
 - 건설업관리시스템 :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등록, 등록사항변경, 행정처분사항 관리
 - 골재업관리시스템 : 골재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업무 관리
 - 건설사업관리공시시스템 : 건설사업능력평가 신청 및 평가·공시
- 건교부·지자체의 건설행정업무 처리 및 관리에 활용
-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확인등을 위하여 기술인력정보시스템과 연계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시스템과 발주자의 공사관리시스템으로 구성
 -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주한 건설공사의 공사명, 도급계약내용,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통보

- 발주자는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공사정보를 관리

-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G2B, 건교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③ 등록갱신을 통한 조사 및 지자체에 대한 감독 강화

매 3년마다 시행하는 등록기준 갱신신고시 갱신기간동안 계속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지자체의 등록갱신신고 확인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등록기준 갱신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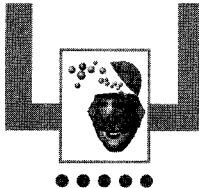
□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서는 건축물·시설물등 건설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기준, 도급방법, 시공 및 기술관리등에 관한 각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자들이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발주자와 건설업자, 건설업자와 하도급업자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전한 건설업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건설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① 건설공사대장 전산입력 자료를 통한 건설업체 상시감독



부실건설업체 퇴출 및 건설시장 위법행위 근절

건설현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대장을 금년부터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et)에 입력하도록 하는 건설공사 통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건설공사대장 : 공종 · 도급방법 · 도급액 · 공사진행상황 및 공사대금수령 · 기술자배치 · 하수급인 · 시공참여자 등 기재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2003. 1. 이후 수주한 3억원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체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주내역, 진행상황등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

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한다.

- 불법하도급 :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위장하도급 등
- 허위과다실적신고 : 실적증명서류의 위?변조, 허위실적기재 등
- 기술자 미배치 : 기술자 이중 배치 또는 미배치 등

②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점검기능 강화

건설현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발주처가 감독관등을 통해 가장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들이 시공상황 및 하도급실태 점검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건설교통부, 관련부처 또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발

주처의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작성을 시달한다.

③ 협회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강화

협회의 시공실적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과장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를 근절 시킨다.

□ 건설업체 관리를 위한 Task Force팀 구성

위와 같은 건설업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건교부, 지자체, 협회, 발주자등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10인내외가 참여하는 협의체(팀장 건설경제과장)를 구성하여 업체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협의한다.

□ 건설공사 계약제도도 개선추진

건설공사 계약제도가 공사특성에 맞게 변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나, 그동안 투명성과 업계 물량배분에 중점을 둘에 따라 「운찰제」로 바뀌었다.

이로인해 요행에 의한 낙찰을 기대한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등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개선도 재정경제부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대책의 시행으로 건설업계에서 부실업체와 위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건설시장을 예의 주시하여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